

『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의 청결유지 의무를 규정하고, 위원회 및 단체에 견학실시 등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처리방법의 개선(안 제2조, 제5조)
-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의 청결유지 의무 신설(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)
- 판매자가 봉투대금을 채납하는 경우 채납금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6항)
-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등 조정(안 제17조)
- 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재활용품 수집단체 등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 근거 마련(안 제17조 및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조, 제7조, 제12조, 제15조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표준조례 (안) : 환경부 2006. 6
-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: 환경부. 2003. 7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및 관리자의 청결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및 단체에 대한 견학 실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-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안 제5조제6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하고
-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,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음
-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봉투 대금을 채납하는 경우 지방세 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처리시민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포함시킨 폐기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재활용품 수집 단체 등에 선진시설 견학 근거를 마련 하였음